

제307회 임시회  
2012. 3. 12.(월)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건설소방위원회

「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2012. 3. 12.(월)

건설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동환 의원 외 6인

나. 발의일자 : 2012년 2월 29일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2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3월 5일

(제3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임현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·자문 역할을 대행하던 지역 발전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폐지됨에 따라

- 그 기능을 수행할 “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”를 구성·운영하고자 현행 조례를 보완·개정하려는 것임

## 나. 주요내용

- 심의·자문 기관 변경 (안 제4조제4항)
  -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 (폐지) ⇒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
-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)
  - 제14조 중 “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”를 삭제하고, “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”을 신설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나 시 찬)

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지역발전협의회는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였으나, 행정안전부에서 협의회 운영비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도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사항으로서,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업무관련부서인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와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였고, 입법예고(2012. 2. 9~ 2.28)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
-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9조에는 시도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심의·자문 역할을 충실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번에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정당성이 인정됨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- 조문의 내용은 「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## 라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-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기에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목 및 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, 제5조, 제8조 중 “지역균형발전기  
본계획”을 “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”를 “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”로 한  
다.

제12조제2항 중 “2 이상의”를 “둘 이상의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되 충청북도지역발전협  
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”를 “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 
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”로 하며, 제16조 중 “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”를  
“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”로 한다.

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, 제15조부터 제17조  
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구성과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  
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 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당연직은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

2. 위촉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, 충청북도정책자문단 위원 2명,  
지역발전연구센터 2명,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발전전문가 등

- ④ 제3항제2호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다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균형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.

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- 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17조(수당 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4조(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)</b></p> <p>① 도지사는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<u>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</u>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</u>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③ <u>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</u>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.</p> <p>④ <u>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</u>은 관련 시장·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<u>충청북도 지역발전협의회</u>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또한 수립된 <u>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</u>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</p> <p><b>제5조(시행계획 수립)</b>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<u>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</u>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8조(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도·점검)</b> 도지사는 <u>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</u>에 의거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·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12조(세출예산의 차등지원)</b> ② 도지사는 2 이상의 낙후지역 시·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.</p>	<p><b>제4조(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)</b>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</u>을 -----</p> <p>② <u>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</u>에는 -----</p> <p>③ <u>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</u>은-----</p> <p>④ <u>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</u>은----- -----<u>충청북도</u> <u>균형발전위원회</u>----- -----<u>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</u>을-----</p> <p><b>제5조(시행계획 수립)</b> ----- -----<u>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</u>의 -----</p> <p><b>제8조(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도·점검)</b> -----<u>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</u>에 -----</p> <p><b>제12조(세출예산의 차등지원)</b> ----- -----<u>둘</u> 이상의 -----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설치) 지역균형발전시책 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되 충청북도지역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14조(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설치) ----- -----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/p> <p>제15조(구성과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</p> <p>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p>1. 당연직은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2. 위촉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, 충청북도정책자문단 위원 2명, 지역발전 연구센터 2명,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발전전문가 등</p> <p>④ 제3항제2호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다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균형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16조(회의)</b>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</li> <li>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</li> </ol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b>제15조(생략)</b></p> <p><b>제16조(준용)</b>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<b>제17조(생략)</b></p>	<p><b>제17조(수당 등)</b>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<b>제18조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<b>제19조(준용)</b> ----- ----- -----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에 -----</p> <p><b>제20조(현행과 같음)</b></p>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국가균형발전특별법

**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29조(시·도 발전협의회 등의 설치)** ① 시·도지사는 시·도의 특성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시·도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시·군·구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을 위하여 시·군·구 발전 협의회를 둘 수 있다. (전문개정 2009.4.22)

### □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

(제정) 2007-04-13 조례 제 2998호  
(일부개정) 2010-01-01 조례 제 3224호  
(일부개정) 2011-04-01 조례 제 3354호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0. 1. 1>

1. "지역균형발전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"이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

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낙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.

3. “낙후지역”이란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시·군을 말한다. <개정 2011. 4. 1>

**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충청북도(이하“도”라 한다)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·군은 도의 종합적인 시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근 시·군과의 협력을 통하여 권역별 발전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등

**제4조(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수립)** ① 도지사는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>

1.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
2.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
3. 지역별,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>

④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 관련 시장·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 지역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또한 수립된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 <개정 2010. 1. 1>

**제5조(시행계획 수립)**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>

**제6조(불균형 실태조사)** ① 도지사는 도내 각 시·군별 지역발전도를 조사·분석하여 매 5년마다 낙후지역을 선정한다. <개정 2010. 4. 1>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발전을

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>

**제7조(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투자협약제 운영)** ① 중장기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·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와 해당 시장·군수가 재정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협약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도·점검)**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의거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·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)** ① 도지사는 연1회 이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할 수 있다.

② 평가 및 컨설팅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 시·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3장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

**제10조(특별회계의 설치)**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용한다.

**제11조(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)**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
2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5퍼센트 이상 금액 중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<개정 2011. 4. 1>
3.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에 수입금 <개정 2010. 1. 1, 2011. 4. 1>
4. 차입금 <개정 2010. 1. 1, 2011. 4. 1>

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
2.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
3. 기타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
4. 예비비 등

**제12조(세출예산의 차등지원)** ① 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·군의 재정상황 및 제6조에 의한 불균형실태 조사결과와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,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2 이상의 낙후지역 시·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.

**제13조(특별회계의 관리·운영)** 특별회계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4. 1>

## 제4장 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등

**제14조(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설치)** 지역균형발전시책 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되, 충청북도지역발전 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. [전조개정 2010. 1. 1]

**제15조(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운영)** ① 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 제시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권역별 균형발전 연구전담팀(이하 “연구전담팀”이라 한다) 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연구전담팀은 설치된 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하며, 권역내의 대학교수, 전문가, 공무원, 의회 의원, 주민 등 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수립, 추진과정, 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제5장 보 칙

**제16조(준용)**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1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방안에서 낙후도가 음(-)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지원되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.

**부 칙(2010. 1. 1 조례 제3224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1. 4. 1 조례 제3354호)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